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471호)

2022. 5.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은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2. 1. 19.
3. 회 부 일 : 2022.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그 관련자 등에 대해 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조사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은닉재산이나 자금흐름을 찾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시키고, 이 같은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나 관련자의 고액 현금거래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라목 신설 및 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 개정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나 고액 현금거래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u><신설></u> 6. (생략)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6.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 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 ----- -----

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에 제공한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금융감독업무, 「예금자
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업무 또는-----

-----금융위원
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
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의 사장 또는-----.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예금보험공사의
사장, 국가정보원장-----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u>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⑥ (생략)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u>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u>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4. ~ 7. (생략) ⑧ ~ ⑫ (생략)	----- ----- -----. ⑤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범죄혐의, 조세탈루혐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 관련 책임</u>-----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공무원</u> (담당자 및 책임자) 또는 직원 (담당자 및 책임자)의 ----- 4. ~ 7. (현행과 같음) ⑧ ~ ⑫ (현행과 같음)
---	--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회사 부실의 조기 확인·부실금융회사의 정리·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추궁·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와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나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 등”)로 하여금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대위(代位)하거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제3항 및 제4항), 필요한 경우에는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항).¹⁾

- 1)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讓受)하기로 결정하거나 양수한 경우 또는 예금등 채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급을 한 경우
 3.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 ③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代位)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소를 제기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

○ 참고로, 2021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는 519개 사의 6,122명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9,700여명의 피고에 대해 약 2조 2,700억원의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됨.

【표1】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 현황

(단위: 개, 명)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합계
부실금융회사	15	6	19	22	132	325	519
부실관련자	191	65	250	160	1,310	4,146	6,122

(자료: 예금보험공사)

【표2】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 명, 억원)

구분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예금 보험 기금	합계
	은행	금융 투자	보험	종합 금융	저축 은행	신협 ¹⁾	소계		
부실금융 회사수	15	6	18	22	85	311	457 ³⁾	48	505
피고수	191	83	276	181	1,026	7,256	9,013	702	9,715
소송 청구액	1,004	342	2,435	3,048	5,433	5,856	18,118	4,617 ⁴⁾	22,735
승소액	476	218	1,346	548	4,056	3,208	9,852	2,691	12,543
회수액 ²⁾	102	54	218	660	923	769	2,726	1,264	3,990

주1) 2010년 1월 1일 신협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협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

주2) 승소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주3) 자진변제, 면책 등의 사유로 조사 완료 후 소송 미제기한 15개 회사 제외

주4) 소송확정액은 4,588억원이며, 소송진행중 금액은 30억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1.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2. 부실관련자의 직계 존속·비속
3. 부실관련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재산을 목적으로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轉得者)
5.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 그런데,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조사의 경우 특정한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이나 은닉재산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나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부실관련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²⁾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를 조사하는 시점에서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부실관련자의 과거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그림】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흐름도



(자료: 2020년 예금보험공사 연차보고서)

- 2)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장이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표3】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융거래정보 요구	6,677	9,477	4,392	31,721	2,274
금융거래정보 제공	5,376	8,232	3,804	30,260	1,480

(자료: 예금보험공사)

□ 한편, 이 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하고(법 제4조 및 제4조의2),³⁾ 금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나 조세탈루 조사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10조),⁴⁾

□ 개정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업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과 같이 자금세탁행위로 규정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조사 업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등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부실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자금세탁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형사상 특수한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조세·관세·지방세의 탈루와 관련된 금융거래들을 자금세탁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⁵⁾ 개정안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 확보를 위해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은닉 행위를 자금세탁행위로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자금세탁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소 거리가 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법 제10조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나 조세·관세 등의 탈루 및 체납 조사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집행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사나 법집행이 아닌 예금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게 수사기관 등과 동일하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법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6) 예금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 확보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권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제공의무가 있고, 부실관련자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상 책임이므로 범죄행위 예방이라는 이 법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제처와 법무부는 자금세탁행위에 민사책임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범죄 및 탈루목적의 행위를 방지하는 이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⁷⁾

문 의 처
02)6788-5111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③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